

울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626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519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62640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호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열

변론 종결 2018. 7. 6

판결 선고 2018.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에게, 양산시 D 대 357㎡ 중 별지 도면 표시 n, ㄷ, ㄷ, 기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激부분 33㎡에 관하여 피고들은 각 16.5㎡씩 1999. 2.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2. 2.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855호로 양산시 E 대 423nf(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7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때부터 위 부동산에서 거주해왔다.

나. 피고들은 가.항 부동산에 인접한 양산시 D 대 357㎡(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 다)에 관하여 1991. 4. 15.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823호로 1990. 8. 10. 상 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로, 위 부동산에는 피고 C의 삼촌인F가 거주해 왔다.

다.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들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n, i, n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邸부분 33㎡(이하 f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담장 내에 들어와 있어 원고는 원고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이 사건 토지를 함께점유·사용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가 1997. 2. 2.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음은 추정된다.

그러나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10. 10. 피고들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토지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6. 11. 11.

당시 피고들 토지에서 거주하던 F에게 "2006. 10. 10. 경남 양산군 D의 경계측량을 통해 인접한 던의 일부분이 D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바 추후 D 소유자의 요구가 있을시 점유부분을 철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1호증, 원고는 위 확약서가 F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F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F는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시효취득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우정 민

별지